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정준호·강훈식·김남근

김한규 • 민형배 • 박홍배

용혜인 • 이광희 • 이연희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 의 매수청구권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그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대주주가 과다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것을 결정하면 대규모의 단주(端株)가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주식병합비율 미만의 소수주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축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병합 시 회사는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도 설명하게 하며,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신설하고, 단주의 가액을 종전의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여 주식병합의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9조, 제443조 및 제44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주식병합의 사유
- 2. 주식병합의 비율
- 3. 주식회사가 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병합하는 주식의 종류
- 4.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시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

제4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1조의2(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 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병합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 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경우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가액을 회사와 종전의 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후 30일 내에 제1항의 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종전의 주주는 법원에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신주의 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적용례) 제439조, 제441조의2, 제443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
차) ①・② (생 략)			차)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주
			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식병합의 사유
			2. 주식병합의 비율
			3. 주식회사가 종류주식 발행회
			사인 경우에는 병합하는 주식
			<u>의 종류</u>
			4.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시 회
			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
			<u>수</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신 설></u>			제441조의2(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
			하여 주식을 병합함으로써 주
			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第443條(端株의 처리) ① 倂合에 | 第443條(端株의 처리) ① 병합에 適當하지 아니한 數의 株式이 지 아니한 部分에 對하여 發行 한 新株를 競賣하여 各株數에 따라 그 代金을 從前의 株主에 게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去來所의 時勢있는 株式은 去 來所를 통하여 賣却하고, 去來 所의 時勢없는 株式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競賣외의 方法으 로 賣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第442條의 規定은 第1項의 |

대하여 그 병합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倂合에 適當하 | 있는 경우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가액을 회사와 종 전의 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 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후 30일 내에 제1항의 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종전의 주주는 법원에 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신주 의 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 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 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